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종사자 등의 주류등 섭취 시 제재기준 강화〉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5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2211554)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항공종사자 등의 주류등 섭취 시 제재기준 강화(황운하의원안 제43조 등) ...	3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221155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8.
3. 회 부 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항공종사자 등의 주류 등 섭취 시 제재기준 강화(황운하의원안 제43조 등)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조종연습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정지 없이 즉시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 ----- ----- ----- ----- ----- ----- ----- 제13호, 제15호----- ----- -----.
1. ~ 31. (생략)	1. ~ 31.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u>제12호</u>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7. (생략) ② ~ ④ (생략)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등)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u>제7호</u>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⑥ · ⑦ (생략)	----- ----. ----- ----<u>제10호, 제12호</u>----- ----- -----. 1.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제5호, 제7호</u>----- ----- -----. 1. ~ 8.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57조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등은 주류(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또는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¹⁾

이를 위반한 경우 제43조에 따라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단계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음.²⁾

1)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원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원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원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2)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계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등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60일, 120일,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증명의 경우에는 효력 정지 처분만 두고 있음.

【 항공종사자 등의 음주 시 행정처분 기준 】

구분	음주 (혈중알콜농도, %)			마약류 등 사용		
	0.02~0.06	0.06~0.09	0.09 이상	1회	2회	3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60일	120일	취소	60일	120일	취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60일	120일	취소	60일	120일	취소
조종·관제 연습허가	60일	120일	취소	60일	120일	취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증명	60일	120일	180일	60일	120일	180일

각 항공사들은 항공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행·근무 시작 전 음주여부를 검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자체 음주측정 실적에 따르면 2023년(4개월) 총 72건, 2024년 총 110건, 2025년 상반기 총 49건의 음주측정 미통과 인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조종사’의 음주로 인한 음주측정 미통과 인원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사별 자체 음주측정 시 미통과 인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3년 (9월~12월, 4개월)	2024년 (1월~12월)	2025년 (1월~6월, 6개월)
대한항공	조종사	5	6	3
	객실승무원	19	31	12
	항공정비사	6	6	0
	운항관리사	1	1	0
	전체	31	44	15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2	1	0
	객실승무원	6	6	6
	항공정비사	1	3	1
	운항관리사	0	0	0
	전체	9	10	7
제주항공	조종사	4	2	1
	객실승무원	8	12	2
	항공정비사	2	0	0
	운항관리사	0	0	0
	전체	14	14	3
진에어	조종사	0	4	0
	객실승무원	1	9	2
	항공정비사	0	1	0
	운항관리사	0	0	0
	전체	1	14	2
에어부산	조종사	0	1	0
	객실승무원	2	9	1
	항공정비사	0	0	0
	운항관리사	0	0	0
	전체	2	10	1
이스타항공	조종사	1	1	0
	객실승무원	1	3	1
	항공정비사	1	0	0
	운항관리사	0	1	0
	전체	3	5	1
티웨이항공	조종사	4	3	1
	객실승무원	5	4	11
	항공정비사	1	2	2
	운항관리사	0	0	0
	전체	10	9	14
에어제타	조종사	0	0	0
	객실승무원	0	0	0
	항공정비사	2	0	1
	운항관리사	0	0	0
	전체	2	0	1
에어서울	조종사	0	0	0
	객실승무원	0	1	1
	항공정비사	0	0	0
	운항관리사	0	2	0
	전체	0	3	1

에어로케이 항공	조종사	0	1	1
	객실승무원	0	0	2
	항공정비사	0	0	0
	운항관리사	0	0	0
	전체	0	0	1
에어프레미아	조종사	0	0	0
	객실승무원	0	0	1
	항공정비사	0	0	0
	운항관리사	0	0	0
	전체	0	0	1
전체		72 (총 782,756건 실시)	110 (총 2,473,397건 실시)	49 (총 1,270,650건 실시)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주류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중 주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임.

항공기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교통수단으로 고도 상공에서 고속으로 운항되며, 비행 중에는 비상 상황 대피가 극도로 제한되고 즉각적인 외부 지원이 불가능함.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종사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항공업무 종사 시 주류 섭취에 대해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철도·선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단계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교통수단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공종사자 등에 대해서만 1회 위반 시 필수적으로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항공종사자에게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선박직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도선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3에서 0.08%에는 180일간 정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2에서 0.1%에는 90일간 정지, 0.1%이상인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하여 단계적 제재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약물·환각물질 섭취의 경우 「도선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에서는 1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타법에 따른 주류등 섭취 시 행정제재 현황 】

근거법률	행정제재		비고
	주류 섭취 시	약물·환각물질 섭취 시	
선박직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기사 면허)	혈중알콜농도 <u>0.03~0.08% 정지 180일,</u> <u>0.08% 이상 취소</u>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u>취소</u> 또는 1년의 범위에서 <u>효력정지</u>	
도선법 (도선사면허)	혈중알콜농도 <u>0.03~0.08% 정지 180일,</u> <u>0.08% 이상 취소</u>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u>취소</u>	* 약물 섭취 시 즉시 취소

근거법률	행정제재		비고
	주류 섭취 시	약물·환각물질 섭취 시	
철도안전법 (운전면허)	혈중알콜농도 <u>0.02~0.1% 정지 90일,</u> <u>0.1% 이상 취소</u>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u>취소</u>	* 약물 섭취 시 즉시 취소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혈중알콜농도 <u>0.03~0.08% 정지 100일,</u> <u>0.08% 이상 취소</u>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u>취소</u>	* 약물 섭취 시 즉시 취소
항공안전법 (자격증명 등)	혈중알콜농도 <u>0.02~0.09% 정지 60~120일,</u> <u>0.09% 이상 취소</u>	약물·환각물질을 사용한 상 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 - 1차위반 : 60일 정지 - 2차위반 : 120일 정지 - 3차위반 : 취소	* 개정안 : 1회 적발 시 즉 시 자격 취소

1회 위반에 대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안전에 미친 영향, 생계 및 개인적 사정 등 위법의 정도와 위반 횟수 및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항공종사자의 자격이 박탈되고,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의 결격사유³⁾에 해당되어 자격증명의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을 장기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3)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항공종사자에 대한 제재가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제재의 형평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취지 및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보다 높은 주의수준이 요구되는 항공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해 혈중알콜농도 기준 및 정지 기간, 필수적 취소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타 입법례(「도선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에서 1차 적발 시 면허 취소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3차 위반 시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재수준을 타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뿐만 아니라 드론 비행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회 적발 시 필수적으로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초경량비행장치⁴⁾는 드론과 같이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도 포함되고, 초경량비행장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일반 항공기에 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현행법령에서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완화하고 있는 점⁵⁾ 등을 고려할 때,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다만,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배터리의 전원(電源)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중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 다.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가. 유인자유기구
 -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5) 혈중알콜농도 0.09%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 **효력정지**(다른 사례의 경우 **취소사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제재의 균형성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안전을 위해 음주·마약류 사용 규제 강화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수치나 횟수에 차등 없이 자격증명 등을 취소해야 함에 따라 타 분야 법령기준에 비해 강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 처분정도의 적정성 등은 버스·선박·철도 등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